



2024년도 제44회 무사고운전자 선발 공고



아래와 같이 **10년 이상 무사고**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선발하여 **무사고운전자증**을 수여하고자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• **신청기간** 2024. 1. 8. (월) ~ 2. 16. (금) 「40일간」

• **신청접수처** 가까운 경찰서 민원봉사실

• **신청대상 (선발기준)** 가. 신규신청

2023. 12. 31. 기준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종사하면서

- 10년 이상 (2023. 12. 31. 기준, 역산) 교통사고(인적피해 교통사고 또는 음주·무면허·조치불이행 물적피해 교통사고)를 일으키지 아니한 운전자
- 표시장 신청에 따른 기간 동안 운전면허가 취소 (적성검사미필취소 제외)된 사실이 없는 자
-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해당됨

나. 제외대상

-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자 또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서 구급차·대여차(렌터카)·구난차·견인차,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(덤프트럭 등 대형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는 해당), 기타 특수자동차의 운전자(특별용으로 제작된 차량으로 이동정비차량, 캠핑카 등)
- 운수회사에 취업하고 있으나,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운전종사하지 아니한 사람
- 기타 결격자

• **제출서류** 가. 무사고운전자증 신청서 1부

나. 사업체별 취업 확인서(운수회사, 조합 발급) 또는 사업체별 경력증명서(운수회사, 조합 발급)

• **표시장구분**

구분	표시장의 종류	비고
30년이상 무사고	교통안전장	표시장 종별에 따라 별도 수여
25년이상 무사고	교통삼색장	
20년이상 무사고	교통질서장	
15년이상 무사고	교통발전장	
10년이상 무사고	교통성실장	

• **참고사항** 가. 무사고기간 산정은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기간을 합산하되, 선발기준일(2023. 12. 31.)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산정

나. 운전경력증명(취업확인서)은 취업하고 있는 소속회사(조합) 또는 과거 취업했던 소속회사(조합)의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증명서에 한함

※ 운수회사가 폐업을 했을 경우, 인터넷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입·퇴사 기록 확인서를 제출하여도 됨

다.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취업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(예시 : 이천이십삼년오월이십일로 표기)

라.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,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

※ 자세한 사항은 시·도경찰청(교통안전계) 또는 경찰서(민원봉사실, 교통조사계, 교통관리계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